



# 한국연구재단

수신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주요 개정사항 안내

## 1. 관련

가.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(2026.3.10. 일부개정)

나.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(2026.3.11. 일부개정)

2. 위 호 관련,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○ 연구개발비 관련 주요 개정사항

구분	기존	개정
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 사용용도 (시행령 제20조 및 사용기준 제75조)	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연구개발비 산입, 재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에 납입해야함	<b>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국고에 납입해야함</b> 단,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연구개발비 산입, 재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 가능
연구개발비 정산 (시행령 제26조 및 사용기준 제80조)	연구개발비 규모와 관계 없이 연구개발과제 정산 실시	연차별 연구개발비 평균 금액 <b>5천만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일부만 정산 실시</b>

※ 세부 변경내용 시행령 및 사용기준 전문 참고

### ○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 사용용도 관련 참고사항

-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부칙에 따라 시행령 개정('26.3.10.)이전에 선정되어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국고 반납이 원칙임
- 그러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이더라도, 혁신법 시행령 개정('26.3.10.) 이전에 이미 사용(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입력 기준)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에 대해서는 개정 이전의 혁신법 시행령을 적용함
- 다만,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이자는 개정 시행령('26.3.10.)을 적용하여, 국고 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함. 끝.

# 한국연구재단 이사장



수신자 대학, 전문대,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,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부설기관, 특정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의 부설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, 기타비영리기관, 그밖의 기관

★담당 김수현 팀장 조유현 센터장 <sup>03/30</sup> 구자필

협 조 자

시 행 연구정산총괄팀-1187 (2026. 3. 30.) 접 수 ( )

주 소 (우) 341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/ <http://www.nrf.re.kr>

전 화 042-869-6655 전 송 / [kimsh52@nrf.re.kr](mailto:kimsh52@nrf.re.kr) / 비공개(5)

『 한국연구재단의 핵심가치 : 창의(Creativity) · 개방(Openness) · 책무(Responsibility) · 탁월(Excellence) 』